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박순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46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1월 21일
발 의 자 :박순규 의원(1명)
찬 성 자 :권영희, 김기대, 김정태,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노승재,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신정호, 양민규,
이광호, 이영실, 이정인,
임종국, 장상기, 최웅식,
최정순, 홍성룡, 황규복
의원(27명)

1. 제안이유

- 그동안 “용역”이라는 단어가 단순 노동이나 기계적 작업 등의 의미로 여겨지면서 업계에서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건설기술이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등 매우 전문적이고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발전하였음을 고려하여 정부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개정하여 2021년 3월 16일 공포함.
- 상위 법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였기에 서울특별시 조례의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 기존 사용하던 용어인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조례 “건설기술용역”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건설기술용역”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을 각각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